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채용 공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장

1 임용예정인원 (4명)

가. 임용예정인원 등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임용예정일	비고
청원경찰	1명	기획운영과(서울 종로)	2025년 7월(예정)	
	3명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강원 평창)		

나. 근무조건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주·야간 및 주말 교대 근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
청원경찰	청사보호	○ 박물관 시설 보호 - 청사출입 통제, 청사 내·외 순찰 및 경비 - 시설 및 국가유산 보호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 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한 업무

※ 담당업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원경찰 직무기술서 [붙임 3] 참고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및 제4조(임용방법 등)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제3호(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에 따라 신체가 건강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양쪽 눈 시력(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인 자
 -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주·야간 및 휴일 교대 근무가 임용 즉시 가능한 자

※ 위 항목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 시 응시 가능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 공통요건**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6.25.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나.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5.5.27.) 기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1) 근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월별 차등우대, 유사직종은 80%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우대요건 경력 산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하며 유사직종은 경력의 80% 인정)

- ① (동일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공무원, 방호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② (유사직종) 청원경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이외의 기관), 경호, 경비, 감시원으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다만, 단순 군 경력은 제외하며,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이력서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경비·방호(청원경찰) 근무경력만 인정, 제출된 증명서에 근무기간(연월일까지 표기), 소속 및 직위(직급),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상근 여부(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발급자(날인 또는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발급기관(직인 및 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담당업무가 불명확할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불임의 경력증명서 양식 제출(상기 내용이 모두 기재된 경우 자체 양식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사본으로도 제출 가능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폐업회사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홈텍스 발급 가능)과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업무내용 확인 가능한 근로계약서 등 함께 제출)
- 직무 관련분야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기관(정상적으로 등록(사업자등록)된 기관을 의미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2) 무도 단종

- 공인 무도 단체 2단 이상 (단별 차등우대)
- 가산점수가 높은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품증’ 불인정)

※ 2단 이상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우대요건 인정 무도 단체 현황은 불임2 참조

3) 학위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교(학과) 졸업증명서(학위증)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및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 계통학과

4) 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우대)

※ 우대 요건 이외 자격 서류 등 제출 금지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급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 2. 직무수행 계획서 / 3. 우대 요건 :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무도단증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체력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체력인증서 원본(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 채용공고일 이전 90일부터 인증서 제출 마감일(면접시험일)전일까지 실시한 체력인증서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응시생별 체력측정 후 체력인증서 발급
(국민체력100(<http://nfa.kspo.or.kr>)을 통해 체력검증을 신청)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발급 방법 ❖

1. 응시자 주소지 관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체력 인증센터에 개별 사전 예약
2. 체력 인증센터 방문 및 체력 측정
3. 체력인증서(평가 내역 포함) 발급, 재발급 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http://nfa.kspo.or.kr>)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바코드, 직인, 워터마크가 삽입·출력된 경우만 인정
4. 유의 사항 : 다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 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 일자 또는 시간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체력 인증센터에 사전문의 후 예약 필수

- **체력측정 결과 2등급 이상 체력인증서를 면접시험 당일 제출 시에만 합격으로 처리**

다.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 청원경찰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5.5.16.(금) ~ 5.27.(화)	'25.5.20.(화) ~ 5.27.(화)	'25.6.13.(금)	'25.6.25.(수)	'25.7.7.(월)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국립고궁박물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5. 5. 20.(화) ~ 5. 27.(화)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관련문의 : ☎ 02-3701-7613)
 -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03045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채용담당 (국립고궁박물관 응시원서 재중)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4"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6호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공인 무도 단증 사본 1부	
	관련분야 학교(학과)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 서류 중 해당사항 없는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불요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7. 7. ~ '25. 8. 8.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7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청원경찰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1-7613)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우대요건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3)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4.1.1.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자격 상실되었으므로 '23.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4)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만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붙임 3

청원경찰 직무기술서

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주요업무	○ 청사 및 시설물, 국가유산 방호 ○ 청사 출입통제 및 주·야간 순찰 ○ 청사 주차질서 유지 및 민원인 안내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 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위기대처 능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 청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 지식
------	--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이 아닌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 자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청원경찰 또는 방호, 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군 경력은 제외하며,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경력 인정) ○ 관련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자 ○ 공인무도 단증 보유자 (2단 이상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우대)
※ 상세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채용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됩니다.	

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주요업무	○ 청사 및 시설물, 국가유산 방호 ○ 청사 출입통제 및 주·야간 순찰 ○ 청사 주차질서 유지 및 민원인 안내 ○ 관람객 안내 및 공공의 질서 유지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 지향, 의사소통 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위기대처 능력, 전문성, 전략적 사고력
------	--

필요지식	○ 청원경찰 직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규의 이해 ○ 청사 및 시설물 방호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경비 지식
------	--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이 아닌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해당 자 -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청원경찰 또는 방호, 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단순 군 경력은 제외하며,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경력 인정) ○ 관련분야와 관련된 학위 취득자 ○ 공인무도 단증 보유자 (2단 이상 가장 유리한 하나만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보유 개수에 따라 차등 우대)
※ 상세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채용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됩니다.	

붙임 4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 A4 1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 A4 2매 이내로 작성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8.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7. 관련분야 학교(학과)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구 분	내 용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10.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6호)	○ 자필 서명 필수
11.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12.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직급
		청원경찰

☐ 제출 서류에 ✓표시 후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목 록	제출여부 (해당사항 체크)
1.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제출 ☐ 미제출 ☐
2. 응시원서 (필수) * 정부수입인지(5,000원) 포함	제출 ☐ 미제출 ☐
3. 이력서 (필수)	제출 ☐ 미제출 ☐
4. 자기소개서 (필수)	제출 ☐ 미제출 ☐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제출 ☐ 미제출 ☐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제출 ☐ 미제출 ☐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제출 ☐ 미제출 ☐
8.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수)	제출 ☐ 미제출 ☐
9. 우대사항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 미제출 ☐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자 필수)	제출 ☐ 미제출 ☐
11.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에 한함)	제출 ☐ 미제출 ☐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를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5. .

성명:

(서명)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서식 제1호> (예시)

(앞 면)

응시원서 (원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본인은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청원경찰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응시부서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국립고궁박물관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직급		청원경찰	
※응시번호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②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③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④ 응시부서 : 응시를 희망하는 근무예정부서 작성(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또는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 ⑤ 정부수입인지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학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학위종류·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자격증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단증 포함)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분야	청원경찰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2025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분야	청원경찰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공고에 명시된 채용 분야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분야 이해도, 향후 직무수행 계획 등을 작성
- 분량은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2025년 월 일

작성 자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 서류 반환 요청시에만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